

## ■ 제4장 이용정원 및 대상자 모집방법

### 제10조(이용대상)

1. 서비스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  - ①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국민 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등급 판정을 받은 자
  - ② 등급 판정을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자
  - ③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화로 인해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
  - ④ 일반 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
  - ⑤ 일상생활지원이 필요한 독거노인
  - ⑥ 기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기관장이 인정한 자

### 제11조(이용정원 및 대상자 모집방법)

1. 기관의 서비스 이용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, 법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.
2. 대상자 모집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.
  - 오프라인 모집방법
    - ①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.
    - ② 지역사회 내 각종 경로행사 및 경로당 방문 홍보활동
    - ③ 기관의 전단지를 유관기관(마을회관, 보건소 등)에 제공 및 기관에 비치함
    - ④ 기타 기관 직원 및 요양보호사의 개별접촉, 대상자의 주변권유 등
    - ⑤ 지역장날에(2일,7일) 주기적으로 전단홍보 활동
  - 온라인 모집방법
    -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(나의 블로그 기본정보 활용)
    - ② 포털사이트(NAVER키워드 검색광고) 유료 광고모집

## ■ 제5장 서비스 이용계약

### 제12조(계약의 목적)

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,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.

### 제13조(이용계약에 관한 사항)

1.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 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“대상자의 가족(보호자)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”(이하 ‘보호자’라 함)과 계약이 가능하다.
2.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.
  - ①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. 단, 대상자(또는 보호자)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 할 수 있다.

- ② 기관과 대상자(또는 보호자)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(이하 '계약서'라함)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(또는 보호자)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(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).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(또는 보호자)에게 <수급자제공자료 및 안내문>의 인쇄물을 제공한다.

#### 제14조(계약기간)

1. 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한다. 단, 대상자(또는 보호자)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.(예-인정유효기간범위까지)
2. 기관과 대상자(또는 보호자)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.
3. 단,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(거부)의사를 밝히지 아니 하고,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.

#### 제15조(기관의 기본 책무)

1.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(또는 보호자)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.
2.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,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.
3.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,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(또는 보호자)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.

#### 제16조(대상자(또는 보호자)의 책임이행)

1. 대상자(또는 보호자)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2. 대상자(또는 보호자)의 신변 또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3.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.
4. 대상자(또는 보호자) 및 그 가족은 분실, 파손,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.

#### 제17조(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)

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(이하 '보호자'에 포함)을 지정하여야 하며,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.

1. 신원인수인의 권리
  -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
  -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
2. 신원인수인의 의무
  - ① 대상자로의서비스제공과 관련한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경우이를 제공할의무

-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
-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
- ④ 장기출장(여행)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

## ■ 제6장 계약의 해지

### 제18조(계약의 해지)

1.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.
2.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.
  - ① 전염병 등이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
  -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
  - ③ 폭행, 욕설,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,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
  -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

### 제19조(절차 및 기한)

1. 대상자(또는 보호자)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 18조(계약해지)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 (또는 보호자)와 기관은 <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(계약해지)통보서>를 작성하여 통보하고, 서면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.
2. 대상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수있다.
3.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.